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협조 안내문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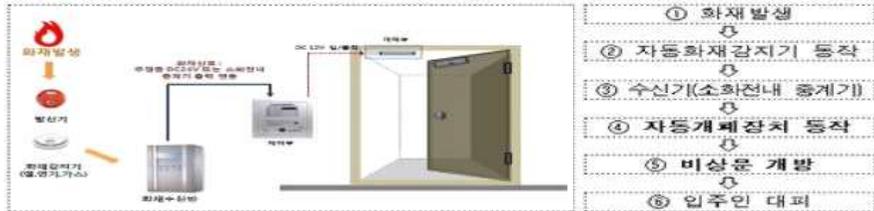
겨울철이 되면 안전사고와 화재 발생이 증대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우 화재 발생 시 피난대피로가 제한되어 있고 거주 인원이 많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유사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옥상을 대피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3항, 4항’을 신설·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짓는 아파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 동래소방서에서는 기존 아파트 옥상 출입문의 시건 관리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하오니 공동주택 관계인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신력 있는 KFI인증 전자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당부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옥상 출입문을 방범등의 이유로 폐쇄할 경우 화재발생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개방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단, 옥상이 경사지붕 등으로 되어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는 제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 760-4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2.7.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장

## 참고

## 겨울철 화재예방 등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 1.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개방되어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2016년 2월 29일부터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가 되었으나 기존의 주택은 자율설치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 「옥상문 자동개폐장치」설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관련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6조2의 ③ :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 제16조2의 ④ :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금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 2. 경량칸막이 등 비상탈출로 활용 홍보

「경량칸막이 등」은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다른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동안 많은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량칸막이 등 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모르는 세대가 많은 실정입니다. 반복적인 방송 안내 등을 통하여 모든 세대가 각 가정의 경량칸막이 등의 시설과 사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3.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노력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설치는 공동주택 간 건물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 아파트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요구됩니다.